

의원 요구 자료 제출

시 행	도시안전과-7361	★주무관	안전기획팀장	도시안전과장	시설안전정책관	도시안전실장	결재
결재일자	2014.3.26.	조청훈	이창석	김현식	정시윤	03/26 조성일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접수번호							
접수일자							
수 신 자	수신자참조						

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(요구번호 360번, 이정찬 시의원, 교육위원회)

1. 시의원 요구자료(360) 제출 관련입니다.
2. 시의원 요구자료 「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되는 행정 계획의 종류 및 현황」을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따로붙임 : 시의원 요구자료 1부. 끝.

이정찬 시의원(교육위원회, 민주당)

요구번호 : 360

요구내용

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되는 행정계획의 종류 및 현황

시의원 요구자료

<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되는 행정계획의 종류 및 현황>

계획명	수립근거		수립주기	효력발생 시기	구속적 계획 여부
	법령명 및 조문	자치법규명 및 조문			
도시안전기본계획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	5년	수립후 즉시	×
안전관리계획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	매년	수립후 즉시	×
도로정비기본계획	도로법 제22조	-	10년	고시된 날부터	×
빗물관리기본계획	-	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5호	10년	수립후 즉시	×
물재이용관리계획	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	-	10년	환경부 승인이후	×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	-	5년	수립후 즉시	×
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	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	-	10년	환경부 승인이후	○
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	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	-	10년	환경부 승인이후	○
도양보전계획	도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	-	10년	환경부 승인이후	×
지하수관리계획	지하수법 제6조의2 제1항	-	10년	국토부 승인이후	×
하수도정비 기본계획	하수도법 제5조, 제6조	-	5년마다 검토 20년마다 수립	환경부 승인이후	○
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	-	10년	환경부 승인이후	○
풍수해저감 종합계획	자연대책법 제16조	-	5년	소방방재청 승인이후	×
하천기본계획	하천법 제25조	-	10년	고시가 된 날부터	○

끝.

작성 자	기관명 (부서명)	직위	성명
	서울특별시 (도시안전과)	담당사무관	이창석
	☎2133-8016	주무관	조청훈
	작성일 : 2014. 3. 25		